

2019년 9급 공채 교정학개론(나 책형)

해설 : 노 신 우(해커스 교정학)

문 1.

정답 ④

해설 ① (○) 법 제14조 제3호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② (○) 영 제5조 제1호

제5조(독거수용의 구분)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 영 제5조 제2호

제5조(독거수용의 구분)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2. 계호상 독거수용: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야 한다(영 제6조 제1항).

제6조(계호상 독거수용자의 시찰) ① 교도관은 제5조제2호에 따라 독거수용된 사람(이하 "계호상 독거수용자"라 한다)을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문 2.

정답 ④

해설 ① (○) 지역사회교정은 인도적 처우, 사회복귀, 경비절감, 과밀수용완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② (○) 범죄자를 공식적 사법절차로부터 이탈시켜 형사사법절차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전환'도 지역사회교정의 실현형태로 분류된다.

③ (○) 지역사회교정은 범죄자가 사회적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 사회복귀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④ (×) 지역사회교정에 대해서는 '형사사법망의 확대'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3.

정답 ③

해설 ① (○) 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77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 규칙 제129조 제2항 단서

제129조(귀휴 허가) ②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는 '특별귀휴사유'이나(법 제77조 제2항 제1호),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는 '일반귀휴사유'에 해당한다(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77조(귀휴)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④ (○) 법 제77조 제4항, 규칙 제142조 제1항

제77조(귀휴)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제142조(귀휴비용 등) ①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

문 4.

정답 ②

해설 ㄱ. (○) 고전주의학파는 인간의 자유의지(자유의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ㄴ. (○) 고전주의학파는 인간의 의지가 행위를 통제함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억제이론).

ㄷ. (×)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 원인(소질, 환경)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실증주의학파의 주장내용이다.

ㄹ. (○) 고전주의학파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형벌의 요소로서 확실성, 엄중성,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ㅁ. (×) 실증주의학파는 관찰과 검증 등의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범죄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문 5.

정답 ④

해설 ①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②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③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2항 제17조(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④ (×)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4조(적용 범위)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문 6.

정답 ②

해설 ① (×) ‘24시간’ 이내에 인도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2조 제1항).

제52조(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① 제49조제1항이나 제50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 판사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 「소년법」 제13조 제1항·제2항

제13조(소환 및 동행영장)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 (×)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소년법」 제39조).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④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문 7.

정답 ②

해설 ① (○) 탄넨바움(F. Tannenbaum)은 사회에서 범죄자로 규정되는 과정이 일탈 강화의 악순환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범죄로 비난받는 특성을 자극하여 강화시켜 준다고 주장하며, 이를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라고 하였다.

② (×) ‘베커(H. Becker)’는 범죄자로 낙인을 찍히는 것이 사회적 지위와 같은 효과를 낳게 하여 사회생활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주지위(master status)’의 작용을 한다고 주장한다. 슈어(E. Schur)는 자아낙인을 주장하였다.

③ (○) 레머트(E. Lemert)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을 구별하면서, 2차적 일탈은 1차적 일탈에 대한 제

재를 공격·방어하기 위한 동기에서 발생하거나, 일탈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스스로를 일탈자로 자아규정하게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④ (○) 베커(H. Becker)는 사회집단이 일탈을 규정하는 규칙을 정하고 특정인에게 적용하여 국외자(이방인, outsider)로 낙인찍음으로써 일탈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문 8.

정답 ②

해설 ① (×)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영 제86조).

제86조(분류전담시설) 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의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규칙 제64조

제64조(신입심사 시기)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류심사(이하 "신입심사"라 한다)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수형자'를 대상으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법 제59조 제3항).

제59조(분류심사) ③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 '3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규칙 제62조 제1항).

제62조(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징역형·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2.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

문 9.

정답 ②

해설 ① (○) 하서웨이와 맥킨리(S. Hathaway & J. Mckinley)가 개발한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는 수용자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 예측가능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보안 수준과 교정프로그램에 수용자를 합리적으로 배정하는데 기여하였다.

② (×) 워렌(M. Warren)이 개발한 대인적 성숙도검사(I-Level)는 청소년의 대인적 성숙도를 7단계로 구분하여 소년범죄자를 각자의 성숙정도에 맞는 처우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나, 전문가가 실시하는 방법이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③ (○) 최초의 근대적 자유형을 시행하였다고 평가되는 암스테르담 노역장에 여자조사장이 설치되어 성별 분류가 최초로 시행되었으며(1597), 이는 전통적 의미의 분류(수용분류, 유럽형 분류)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④ (○) 갑오개혁 이후 감옥규칙에 의한 징역표가 제정되어 기초적 분류 및 누진처우제도가 도입되었다.

문 10.

정답 ③

해설 ① (○) 클레머(D. Clemmer)는 수용자의 수용기간이 길수록 교도소화되는 정도가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② (○) 휠러(S. Wheeler)는 수형단계에 따라 교도소화의 정도가 다른데, 초기·말기 단계의 수용자는 친교도관적 태도가 높고 중간 단계의 수용자는 친교도관적 태도가 낮다고 주장하였다(U형 곡선이론).

③ (X) 서덜랜드와 크레시(E. Sutherland & D. Cressey)에 의하면 수형지향적 부분화에 속한 수형자는 수용생활을 편하게 보내기 위해 교도소 내에서의 지위획득에 몰두하고, 출소 후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

④ (O) 슈랙(C. Schrag)은 수형자의 역할 유형을 고지식자(친사회적 수형자), 정의한(반사회적 수형자), 정치인(가사회적 수형자), 무법자(비사회적 수형자)로 분류하였다.

문 11.

정답 ④

해설 ① (O) 법 제117조 제1항

제117조(청원)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 (O) 법 제117조 제2항

제117조(청원)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③ (O) 법 제117조 제3항

제117조(청원)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X)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영 제139조 제1항).

제139조(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① 소장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문 12.

정답 ①

해설 ① (O) 영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65조(서신 내용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합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나. 제84조제2항에 따른 처우등급이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
2. 수용자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② (X)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영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7항).

제43조(서신수수) ⑦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③ (X) 전화통화의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법 제44조 제2항).

제44조(전화통화)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X) 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소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규칙 제29조).

제29조(통화요금의 부담) ① 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② 소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또는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문 13.

정답 ③

해설 ① (X) '무익한 전략'이란 별다른 대책 없이 교정시설이 증가하는 수용자를 더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② (X) '선별적 무능력화'는 강력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부 중·누범자를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범죄의 감소 및 과밀수용의 해소를 의도하는 방안이다.

③ (O) 인구감소전략 중 '정문정책'은 교정시설의 수용 이전단계에서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경미범죄자나 초범자에게 가능한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강력범죄자에게는 적절하지 않고, 형사사법망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④ (X) 인구감소전략 중 '후문정책'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자를 새로운 입소자를 위한 공간 확보의 차원에서 형기종료 이전에 출소시키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회전식 교도소문 증후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14.

정답 ③

해설 ① (O)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조(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② (O)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④ 위탁계약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하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③ (X) 이사는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나, 민영교도소 등의 장은 겸할 수 있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참조).

제13조(임원 등의 겸직 금지)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나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외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④ (O)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3조(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문 15.

정답 ③

해설 ㄱ. (X)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는 보호실 수용사유이다(법 제95조 제1항 제1호).

제95조(보호실 수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2.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ㄴ. (○) 법 제94조 제1항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①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ㄷ. (○) 법 제98조 제2항 제1호, 제97조 제1항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포승 :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ㄹ. (×)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에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제101조(무기의 사용) ①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2. 수용자가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여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4.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5. 수용자가 교도관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하는 때
6.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설비에 대한 중대하고도 뚜렷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는 때

문 16.

정답 ①

해설 ①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2조(치료감호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근로보상금 등의 지급) 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게는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석방 후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X) 집행이 시작된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3조(치료의 위탁) 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집행이 시작된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④ (X) 종료하기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제5항).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③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2에 따른 살인범죄(이하 "살인범죄"라 한다)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는 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문 17.

정답 ①

해설 ① (X)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단기의 계약(계약기간이 2개월 이하인 계약)은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6조(교도작업에의 민간참여) ② 교정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이하 이 조에서 "민간참여작업"이라 한다)의 내용을 해당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단기의 계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규칙 제5조(단기계약) 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단기의 계약"이란 계약기간이 2개월 이하인 계약을 말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O)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① 영 제6조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영작업: 법 제6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2. 위탁작업: 법 제6조에 따라 교도작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을 통하여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3. 노무작업: 수용자의 노무를 제공하여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4. 도급작업: 국가와 제3자 간의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

③ (O)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O)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9조(수의계약의 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 18.

정답 ②

해설 ① (O) 「형법」 제45조·제47조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② (X)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따라서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완납시까지 노역장유치를 명할 수 없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O) 「형법」 제70조 제2항

제70조(노역장유치)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O) 「형법」 제69조 제2항

제69조(벌금과 과료)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문 19.

정답 ④

해설 ① (O)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2조(이송) ① 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② (O)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2항

제14조의3(전자장비의 설치·운영) ②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영상장비로 보호소년등을 감호할 때에는 여성인 보호소년등에 대해서는 여성인 소속 공무원만, 남성인 보호소년등에 대해서는 남성인 소속 공무원만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O)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제18조(면회·편지·전화통화) ④ 원장은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편지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④ (X) '원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신이 직접 그 보호소년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조).

제23조(친권 또는 후견)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등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문 20.

정답 ②

해설 ㄱ. - A : 의료모형은 국친사상과 실증주의를 결합하여, 비행소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소질·환경)에 의해 범죄로 나아가게 된다고 보고, 비행소년은 처벌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며 국가는 비행소년을 대리부모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ㄴ. - B : 적응모형은 국친사상과 실증주의에 재통합사상을 결합하여, 범죄자는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과 합법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현실요법·환경요법·집단지도상호작용·교류분석 등의 처우기법을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ㄷ. - D : 최소제한모형은 낙인이론에 근거하여, 낙인의 부정적 영향, 소년교정의 비인도성 등을 이유로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입장으로서, 비행소년에 대한 절차적 권리의 보장 및 시설 내 처우의 제한을 주장한다.

ㄹ. - C : 범죄통제모형은 기존의 비행소년 처우모형의 실패를 비판하면서, 엄격한 훈육과 처벌만이 소년 범죄를 억제하는 대안이라고 보아, 범죄자에 대한 처우가 아닌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중시하고, 비행소년에 대한 지역사회교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